민중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칙

전 문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는 식민지 한국 민중의 아들딸들로서, 일제하 민족해방투쟁에서 비롯하여 4.19혁명과 70년대 민주화 운동, 80년대 민족자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애국애족의 학생운동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양심적 지성인을 양성함으로서 자주 학원을 건설하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여 민중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되는 자주 민주 통일조국 건설에 이바지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 민중시대인은 민족자주의식에 입각한 사회비판과 실천적 진리탐구를 통하여 학원과 사회의 자주화에 경주하며, 이를 침해하는 반민족적 반민주적인 세력과도 싸워나가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을 끝까지 수행해 나간다. 이에 통일염원 44년 8월 개정하고 통일진군 45년 4월, 자주민족통일 진군 52년 4월에 개정된 회칙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학생회 건설의 단결된 의지로 다시 발의하여 2008년 3월 학생총회를 통하여 다시 개정하는 바이다.

수정증보전문

여기 우리 민중서울시립대학교의 학생들은 지난 세월의 탄압과 강압에 항거하여 유보되어왔던 학생의 인권을 확보하고 자치적 전통을 이룩하였으며 이제 사회적 정의실현과 진리를 추구하는 인류의 지성으로서 자유롭고 담론적인 학풍을 진작하고, 우리 스스로 구성한 총학생회와 각 기구를 통하여 학도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며, 학원의 자주화에 기여하여 장차 사회로 나아가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 사회적 불의의 해소에 노력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옹호하는 양심적 지성인이 될 것임을 선언하면서 4차에 걸쳐 개정된 회칙을 이제 대의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체학생총회에 결의로 개정한다.

2009년 9월 29일

회칙개정위원장 류한우
회칙개정위원 이영환
회칙개정위원 박현봉
회칙개정위원 이신광
회칙개정위원 추호동
회칙개정위원 김용환
회칙개정위원 조관훈
회칙개정위원 박지만
회칙개정위원 이훈동
회칙개정위원 신은지

제1장 총강

제1조[명칭] 본 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라 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학생회 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인 인재양성과 자주 학원 건설에 매진하여 그를 바탕으로 사회에 나아가 조국의 자주 민주통일에 기여하고 안으로는 학생권익 보호와 민중시대인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 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사과정 재적 중인 자로 한다. 단 휴학생은 그 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
② 본 회는 동문 졸업생을 예우하며, 졸업생은 각 기구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본 회는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학생에게 그 체류 및 유학기간 동안 본 회의 회원으로서의 지위와 권익을 보장한다. 그러나 그 체류 및 유학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제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5조[학생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대한 자유로운 학문과 예술 등을 통하여 정의와 진리를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본회는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번성하게 할 의무가 있다.

제6조 본 회의 회원은 민주적이며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여 신임한 자치 기구를 구성할 권리가 있으며, 자치기구가 회원의 신임을 배반할 시에는 회원은 그에 대한 신임을 철회하여 새로운 기구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

제7조 본 회의 회원은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거나 자치권에 위협을 받을 시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제8조 본 회의 회원은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활동이 보장되며, 본 회는 지난 역사에서 한 때 유보되었던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9조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모든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0조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사업진행과 예산의 집행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보고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학생운영참여] 본 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지위를 유지하며, 대학의 자주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당국의 대학운영에 있어 다음 사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주요사항
2. 학생의 권익에 관한 사항
3. 본교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수립 및 시안
4. 학사일정의 효율적 운영
5. 기타 본 회의 목적과 관련한 사안

제12조[연대활동] 본 회는 그 활동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학내외의 다른 여타 단체 및 인사들과 연대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차별금지] 본 회의 회원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인종, 종교, 사상, 출신지역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

제14조[기타] ① 본 회 회원으로서의 성질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는 이 회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본 회 회원의 모든 권리는 본 회의 존속, 회원 간의 화합,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세칙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 회 회원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

제15조[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② 모든 회원은 회칙과 세칙을 수호하고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③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모든 회원은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여 자치 기구를 구성할 의무를 진다.
⑤ 모든 회원은 여하의 대내외적 불의에 항거하여 저항하며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정의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⑥ 본 회는 회원의 의무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원을 최대한 옹호할 의무가 있다.
⑦ 본 회의 회원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인종, 종교, 사상, 출신지역 등에 의해 타인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제3장 전체학생총회

제16조[정의] 전체학생총회는 본 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직접민주기관이며 최고의 권력기구이다. 본 회의 모든 기구는 전체학생총회의 결의에 기속된다.

제17조[의장] 전체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다만 회칙개정의결을 위한 경우 또는 총학생회장에 대한 파면결정여부를 묻는 투표를 위하여 집회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장을 전체학생총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8조[권한] ① 전체학생총회는 본 회 운영 및 학생전체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결정한다.
② 전체학생총회는 그 고유한 권한으로 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파면결정권과 회칙개정의결권을 갖는다.

제19조[소집] ① 전체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매 학기 1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총학생회장, 중앙운영위원회, 대의원 회의 의결 또는 회원 30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한다.
④ 의장은 전체학생총회 소집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의제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원은 집회의 의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⑤ 총학생회장 등 의장이 ③항의 의결이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회를 요구한 모든 회원은 즉석에서 임시 의장과 약간인을 선임하여 개회 및 의사를 진행 할 수 있다.

제20조[의결] ① 전체학생총회는 본 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온라인이나 서면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한 의결은 효력을 갖는다.
③ 총학생회장 등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개회에 즈음하여 의결권자의 총수를 공표한다.

제4장 학생총투표

제21조[정의] 학생총투표는 본 회의 최고 의결수단이며 총회와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

제22조[구성] 학생총투표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23조[발의] ① 학생총투표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진행한다.
② 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3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이내에 학생총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학생총투표 실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 ① 학생총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관리한다.

제25조[세칙] 기타 학생총투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의원회의에서 정한 학생총투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5장 대의원회의

제1절 통칙

제26조[지위] ① 본 회 전체 회원의 대의기구로서 대의원회의를 둔다.
② 세칙의 제정권 및 그 개정권은 대의원회에 속한다.

제27조[목적] 대의원회의는 본 회 회원의 자주적이고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민주적으로 대의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학생회의 활동을 통해 대학의 자주화를 실현하며, 나아가 목적을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의결하고 집행을 감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8조[구성] ① 대의원회의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역별·직능별로 선출된 대의원과 비례대표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의의 구역별 대의원은 그 정한 정관에 따라 선출된 각 단과대학의 정·부학생회장, 각 학부 및 학과의 정·부학생회장으로 한다.
③ 직능별 대의원은 각 기구의 정관에 따라 선출된 동아리연합회의 회장, 동아리연합회의 각 분과 분과장, 본교 언론협의회의 회장, 학생복지위원장, 감사위원장, 체육회장으로 한다.
④ 비례대표대의원정수는 전체 대의원정수(구역별 대의원정수, 직능별 대의원정수 및 비례대표대의원정수를 모두 포함한 정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으로 하고(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 그 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해 연도 학부·과의 입학정원이 본교 입학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인 학부·과(이하 이 항에서 “의석할당학부·과”라 한다)에 배분한다.

1. 의석할당학부·과에 당해 연도 의석할당학부·과 전체 입학정원 대비 각 의석할당학부·과의 정원 비율에 비례대표대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의 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에는 단수가 큰 순으로, 단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많은 순으로 1석씩 배분한다.
2. 의석할당학부·과는 해당 학부·과의 운영위원을 제1호에 따라 배분된 정수의 범위 안에서 비례대표대의원으로 추천하고, 대의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3. 비례대표대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할당학부·과는 궐원된 대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추천한다. 제2호에 따라 의석할당학부·과에서 추천한 사람이 대의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때에도 같다.

⑤ 대의원은 집행부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29조[임기] 대의원회의의 대의원의 임기는 대의원의 자격과 지위에 따른 임기와 동일하다.

제30조[업무 및 권한] 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학칙 개정 건의.
2. 회칙 개정 발의권.
3. 세칙 제정 및 개정권.
4.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탄핵발의권.
5.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의 해임의결권.
6. 총학생회 사업계획의 심의 결정권.
7. 전체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8. 총학생회 예산의 결정권 및 결산보고요구권.
9. 학생회비 책정안의 심의 및 결정권.
10. 총학생회장이 탄핵되었을 시 권한대행 선출권.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권.
12. 총학생회 각 기구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
13. 학내에서 부정 및 비리 발견 시 학교당국에 그 당사자에 대한 징계 요구권.
14. 총학생회 각 기구 간부들에 대한 출석 요구권.
15. 학생총투표 시행 요구권.
1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의장과 위원회

제31조[의장] 대의원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32조[조직] ① 대의원회의는 회의소집 및 운영, 의사와 집회의 준비, 의결사항과 세칙제정・개정의 공고를 위해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 단과대학의 정학생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상임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의는 그 효율적 운영과 제27조에 규정된 목적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하여 그 의결로서 각종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절 의사

제33조[소집] ① 대의원회의의 정기회는 매 학기 2회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총학생회장, 상임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대의원회의의 상임운영위원회는 당해 연도 3월 초순에 집회하여 정기회의 소집시기와 집회의 준비, 의사절차와 의결사항, 세칙의 제・개정안에 관한 논의와 공고를 행한다.
③ 기타 정기회의 시기와 준비는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④ 총학생회장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기에 관하여는 상임운영위원회가 정할 수 있으며 의제를 추가할 수 있다.
⑤ 정기회는 7일 전에 소집과 의안을 공시하며, 임시회는 3일 전까지 소집과 의안을 공시한다.

제34조[의안] ① 집행부와 대의원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은 단독 또는 수인이 찬성으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정기회의 경우 의안은 집회 10일 전까지, 임시회의 경우 소집 공고 직전까지 의장 또는 상임운영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수인의 대의원이 찬성으로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대표 발의한 대의원과 찬성 대의원을 의안 표지에 명시한다.

제35조[의결] ① 대의원회의의 본 회의와 각 위원회는 회칙 또는 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단독으로 제출한 의안의 대의원과 수인이 발의한 의안의 대표 발의 대의원 및 그 찬성 대의원은 그 의안에 관하여는 불출석하더라도 참석과 찬성으로 간주한다. 다만, 불출석 중에 제출된 수정안과 기타 의안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온라인·서면의결] 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회에 불참을 통보한 대의원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특정의안에 대하여 참석과 의결을 할 수 있다. 온라인・서면의결은 그 의안에 한하여 참석과 의결로 의제한다.
② 온라인・서면으로 참석과 의결할 수 있는 것은 미리 공고된 의안에 한한다. 미리 공고되지 아니한 의안 또는 불출석 중에 제출된 수정안, 기타 의안은 온라인・서면의결의 대상이 아니다.

제37조[의사공개] 대의원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개인의 명예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공포 등] ①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 세칙안은 회칙 또는 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학생회장이 7일 이내에 공포한다.
② 총학생회장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③ 세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3일을 경과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④ 세칙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총학생회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의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총학생회장은 세칙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세칙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⑥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 대의원회의는 지체 없이 집회하여 재의에 붙이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세칙안은 세칙으로 확정된다.

제4절 예산 및 결산

제39조[예산] ① 대의원회의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의결로 예산안을 확정한다.
② 집행부는 임기 시작에 즈음하여 지체 없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당년도 첫 번째 대의원회의에 제출한다.

③ 예산안이 부결된 경우에 집행부는 20일 이내에 다시 편성한 예산안을 대의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의원회의는 그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로 예산안을 확정한다.
④ 대의원회의는 집행부의 동의 없이 제출된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준예산] ①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집행부는 대의원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준예산)

1. 본 회칙이나 세칙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이미 발효된 세칙 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발효된 대외적 협약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예산안 확정 이전에 예산집행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유사한 비목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전의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집행은 사후에 대의원회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41조[추가경정] 집행부는 예산에 추가 및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의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구할 수 있다.

제42조 집행부는 예산 외에 본 회의 부담이 될 협약을 체결에 있어서 미리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3조[결산] ① 집행부는 매 학기별로 결산보고서와 회계장부의 복본을 대의원회의에 제출한다.
② 대의원회의의 상임운영위원회는 결산보고서와 회계장부의 복본을 감사위원회에 이송하여 감사를 행한다.
③ 대의원회의는 결산에 대한 감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공고한다.

제5절 대외적 협약 등에 관한 동의권

제44조 ① 대의원회의는 타 대학교 및 기타 단체와 조직체 구성 및 공동연대에 관한 협약, 본회의 권리를 제약하는 협약, 본회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약 또는 세칙제정이 필요한 협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대의원회의는 시국선언 등 기타 대외적 선언, 동맹휴학, 전체학생궐기 및 공동연대투쟁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절 집행부에 대한 출석 등의 권한

제45조 [출석요구] ① 대의원회의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부총학생회장 및 중앙집행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정・부총학생회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중앙집행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총학생회장 또는 중앙집행위원은 대의원회의나 그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진행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③ 정・부총학생회장은 대의원회의에 출석을 통보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절 감사 및 조사

제46조 ① 대의원회의는 그 의결로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 및 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업무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집행부

제1절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제47조 [총학생회장의 지위와 책무] ① 총학생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대내적 사업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② 총학생회장은 본 회의 운영과 계속, 본 회의 구성원의 화합 및 복리의 증진과 본 회의 회칙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본 회의 모든 사업의 집행권은 총학생회장을 수반으로 하는 집행부에 속한다.

제48조[부총학생회장의 지위와 책무] ①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사업집행에 있어서 총학생회장의 명을 받아 집행부를 통할한다.
② 총학생회장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③ 전항의 경우 등 기타의 사유로 부총학생회장이 공석으로 된 때에는 총학생회장은 부총학생회장 후보자를 지명하여 대의원 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선거권-피선거권] ① 정·부 총학생회장은 공동으로 입후보 하며 본 회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정·부 총학생회장의 선거는 복수 입후보의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단독 입후보의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단독 입후보의 경우 전체 투표자 수가 선거권을 가진 전체 회원의 3분의 1 미만일 경우에는 그 선거는 불성립으로 된다.
③ 총학생회장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임기 시작일 현재 4학기를 마쳐야 하며, 부총학생회장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임기 시작일 현재 2학기를 마쳐야 한다.
④ 정·부 총학생회장 선거의 세부적인 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50조[임기] ① 정·부 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정·부 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된 때 또는 총학생회장이 탄핵파면결정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잔임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궐위 또는 파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일 경우 또는 보궐선거 종료 시까지는 대의원회의가 권한대행자를 선출한다.

제51조[권한] ① 총학생회장은 본 회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있어서 최종 승인권을 갖는다.
② 총학생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학생총회의 소집을 발할 수 있다.
③ 총학생회장은 회칙과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부의 구성원을 임면한다.
④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승인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에 제출한다.
⑤ 총학생회장은 직접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의원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⑥ 집행부의 행위는 문서로서 기록하며,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서명하고 관계 중앙집행위원이 부서한다.

제52조[사퇴] ① 정·부 총학생회장이 사퇴를 원할 경우 대의원회에 사퇴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사퇴를 인정한다.
② 전 1항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보고하는 대의원회의 종료 전 탄핵파면결정에 대한 안건이 발의 될 경우 사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정·부 총학생회장이 대의원회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퇴에 관한 서면 제출을 인정한다.
④ 정·부 총학생회장이 사퇴에 관련된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한 경우 대의원회 의장은 즉시 대의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2절 중앙집행위원회

제53조[지위]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예산안·사업계획안 기타 정책 등을 입안한다.
② 중앙집행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면한다.
③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부총학생회장은 부의장이 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회칙과 세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내부 조직 및 기타 집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회의] ① 다음의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야 한다.
1. 총학생회장이 발의하는 회칙개정안
2. 대의원회의에 제출하는 세칙안 등 각종 의안
3. 신규 사업계획안과 집행부의 일반 서무
4.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5. 집행부 내부에 적용되는 내규안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전항의 사항 중 신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보고서의 입안에 있어서는 총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아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절 인수위원회

제55조[정의] ① 정·부 총학생회장 당선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집행부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회의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정·부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당선자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정·부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부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56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정·부 총학생회장 당선자를 보좌하여 집행부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인수위원회는 정·부 총학생회장 임기개시일 이후 7일의 범위까지 존속한다.

제57조[업무] ①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각 기구와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집행부의 신규 사업계획의 논의
3. 신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의 편성
4. 신규 사업계획과 예산안 편성을 위한 각 기구와의 교섭
5. 세칙제정·개정안의 입안
6. 새로운 집행부 구성원의 인선 등 관련업무의 준비
7. 새로운 정·부 총학생회장 취임과 관련된 준비
8. 그 밖에 집행부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② 인수위원회는 전항 3호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5호의 세칙제정·개정안의 입안을 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대의원회의는 인수위원회가 전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한 사업계획안, 예산안 기타 의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으로 의제하여 의결한다.

제58조[구성] ① 인수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당선자를 위원장으로, 부총학생회장 당선자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그 외 총학생회장 당선자가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수위원회의 위원은 집행부의 구성원으로 의제한다.

제59조[업무지원] ① 집행부는 인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본 회의 각 기구의 장은 인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인수위원회는 활동에 관한 예산에서 회칙과 세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출에 대하여 본 회의 재원으로 전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에 반영되어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으로 성립되어야만 한다.

제4절 권한대행

제60조[정의] ① 정·부 총학생회장의 궐위 혹은 정·부 총학생회장이 탄핵파면결정으로 자격을 상실하여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일 경우 정·부 총학생회장의 지위와 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정·부 총학생회장의 권한 대행자는 새로운 정·부 총학생회장의 당선자의 임기 개시일 전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제61조[선출] ① 정·부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자는 대의원회의를 통해 선출하며 2/3 이상의 동의를 통해 선출 한다.
② 정·부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후보자는 현직 대의원 혹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한다.
③ 본 조 1, 2항에도 불구하고 탄핵 발의에 따른 권한대행 선출은 회칙 제100조에 따른다.

제62조[업무] ① 정·부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각 기구와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업계획의 논의
3.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의 편성
4. 사업계획과 예산안 편성을 위한 각 기구와의 교섭
5. 세칙 제정·개정안의 입안
6. 집행부 구성원의 인선 등 관련 업무의 지속
7. 그 밖의 집행부 운영의 지속에 필요한 사항

② 권한대행자는 전항 3호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5호의 세칙 재정, 개정안의 입안을 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대의원회의는 권한대행자가 전 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한 사업계획안, 예산안 기타 의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으로 의제하여 의결한다.

제63조[권한] ① 정·부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자는 회칙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정·부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갖는다.

제64조[사퇴] ① 정·부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자가 사퇴를 원할 경우 대의원회에 사퇴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사퇴를 인정한다.
② 정·부 총학생회장이 대의원회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퇴에 관한 서면 제출을 인정한다.
③ 정·부 총학생회장이 사퇴에 관련된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한 경우 대의원회 의장은 즉시 대의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5절 비상대책위원회

제65조[정의] 비상대책위원회는 권한대행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총학생회장의 임기 종료일부터 권한대행 선출 시까지로 한다.

제67조[선출]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출하며 2/3이상의 동의

를 통해 선출 한다.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직 중앙운영위원인 자 혹은 현직 중앙운영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한다.

제68조[업무] ①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각 기구와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업계획의 논의
3.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의 편성
4. 사업계획과 예산안 편성을 위한 각 기구와의 교섭
5. 세칙 제정・개정안의 입안
6. 집행부 구성원의 인선 등 관련 업무의 지속
7. 그 밖의 집행부 운영의 지속에 필요한 사항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전항 3호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5호의 세칙 재정, 개정안의 입안을 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전 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한 사업계획안, 예산안 기타 의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으로 의제하여 의결한다.

제69조[권한]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칙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정・부총학생회장의 권한을 갖는다.

제70조[사퇴] ①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를 원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퇴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사퇴를 인정한다.

제7장 중앙운영위원회

제71조[지위] 집행부가 입안한 각종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안, 규칙안 및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각 종 정책을 심의하여 조정하는 기구로서 중앙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2조[구성]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을 의장으로 하여 부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의 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언론협의회장, 학생복지위원장, 감사위원장, 체육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전항에 규정된 각 위원의 지위는 그 대의원의 자격과 지위에 따른 임기와 동일하다.

제73조[업무 및 권한] 중운위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집행부가 입안한 사업계획안의 심의권.
2. 집행부가 입안한 학생회비 증감안에 대한 심의권.
3. 본 회 예산인 편성안과 결산 보고서에 대한 심의권.
4. 총학생회장이 입안한 회칙개정안에 대한 심의권
5. 집행부가 입안한 세칙 제정・개정안에 대한 심의권.
6. 전체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7. 기타 집행부가 입안하거나 진행 중에 있는 정책에 대한 심의권.
8.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부에 조정요구권.
9. 비상대책위원장 선출권.

제74조[소집] ①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정・부총학생회장 또는 중앙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④ 의장은 소집 24시간 전까지 그 의제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부총학생회장 또는 각 위원은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75조[의결] ① 중앙운영위의 의결은 재적 의원 2분의 1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언론협의회 의장은 발언권만 가진다.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각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경우 미리 공고된 의안에 한하여 온라인이나 서면을 이용하여 실명을 표기하여 출석과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장 학내 각 자치기구와의 관계

제1관 통칙

제76조[원칙] 총학생회는 교내의 각 자치기구의 독립성과 계속성을 보장하며, 상호 업무진행과 후의를 위하여 협조하며, 회원의 복리와 권익의 향상 및 민주적 기구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 나간다.

제77조[同前] 총학생회는 교내의 각 자치기구의 정관 및 그들이 신임한 정당한 대표자를 인정하며, 그를 통하여 관련 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2관 각 단과대학과 학과 및 학부 학생회

제78조[정의] 각 단과대학과 학과 및 학부 학생회는 소속 회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스스로의 결사를 조직하고 정관을 성립하며, 그 독립적인 지위에 기하여 총학생회와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제79조[대표] 각 단과대학과 학과 및 학부 학생회는 각 그 보유한 정관의 규정 또는 그 소속회원들의 결의에 따라 대표와 부대표를 신임하며 총학생회는 그 정당하게 신임된 대표와 부대표를 인정하고 신임의 철회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성을 부정하여야 한다.

제80조[기타] 각 단과대학과 학과 및 학부 학생회는 각 그 보유한 정관의 규정 또는 그 소속회원들의 결의에 따라 기구를 설치·폐지할 수 있고, 총학생회는 그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관 총여학생회

제81조[정의] 본 회의 여학생 전체로 구성되는 전체 여학우들의 대표기구로서 여학우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각 종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폐지와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는 총여학생회는 그 민주적이고 자주적 활동에 따라 스스로 결사를 조직하고 정관을 성립하며, 그 독립적인 지위를 보유한다.

제82조[대표] 총여학생회는 스스로의 정한 정관의 규정 또는 그 소속회원들의 결의에 따라 대표와 부대표를 선임하며, 총학생회는 그 정당하게 신임된 대표와 부대표를 인정하고 신임의 철회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성을 부정하여야 한다.

제83조[기타] 총여학생회는 각 그 보유한 정관의 규정 또는 그 소속회원들의 결의에 따라 기구를 설치·폐지할 수 있고, 총학생회는 그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관 동아리 연합회와 산하 동아리

제84조[정의] 시대의 열정적인 학우들이 그 민주적 역량을 통하여 각 동아리를 성립시키고 상호 협력하며, 그 상호간의 공통적 진흥을 위하여 연합체를 구성하였는바 총학생회는 그 구성원들이 성립시킨 동아리 연합회와 산하 동아리가 학내에서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며, 그들의 젊은 기상의 유지를 위하여 협조하고 활동과 권익을 옹호하여 한다.

제85조[대표] 각 동아리와 그들의 연합체인 동아리 연합회의 대표들은 모두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그 구성원들의 신임을 얻은 것이며, 총학생회는 이들의 대표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6조[기타] ① 각 동아리와 그들의 연합체인 동아리 연합회는 각 그 보유한 정관의 규정 또는 그 소속회원들의 결의에 따라 기구를 설치·폐지할 수 있고, 총학생회는 그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총학생회는 각 동아리와 그들의 연합체인 동아리 연합회의 활동을 옹호하며, 그들의 발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관 학생복지위원회

제87조[정의]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에게 각 종 복리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헌신적 봉사정신으로 결사한 학생복지위원회는 스스로의 정관과 결의에 의하여 유지·운영되며 총학생회는 그들의 업무가 전체 학우들을 위한 복리와 편의의 제공이라는 헌신임을 인식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88조[대표] 학생복지위원회의 대표와 그 구성원들은 그 스스로가 정한 정관의 절차에 따라 대표와 구성원을 보유하며, 총학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신임된 대표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6관 감사위원회

제89조[정의] 감사위원회는 본 회의 각 기관의 회칙이나 세칙위반사항과 직무에 관한 비위를 감찰하고, 예산의 투명하고 정당한 집행이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하며, 스스로가 정한 정관에 의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보유한다.

제90조[대표] 감사위원회는 스스로가 정한 정관의 절차에 따라 대표와 구성원을 보유하며, 총학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신임된 대표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91조 ① 감사위원회의 감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총학생회장과 중앙집행위원회의 각 위원의 회칙●세칙위반사항과 직무감찰
2. 본 회 대의원의 회칙●세칙위반사항과 직무감찰
3. 기타 본회 기관의 회칙이나 세칙위반사항과 직무에 관한 비위 감찰
4. 본 회 기관의 예산에 따른 결산과 회계검사
5. 본 회 기관의 재정관리 관한 세칙 등 비목에 따른 사용내역과 출연된 금액의 동일성 검사

6. 본 회 각 기관이 행한 출금과 급부의 수령에 있어 영수증의 진정성 검사
7. 세칙 상 제한된 한도의 초과 여부와 전용 여부 감사
8. 기타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비위 감찰
② 감사위원회는 전조 각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 회의 기구는 항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2조 ① 감사위원회는 내부 의결에 따라 대의원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감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대의원회의의 의안으로 된다.
② 감사위원회는 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대의원회의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중앙집행위원회 각 위원의 회칙・세칙 위반사항 또는 직무상 비위의 공고, 시정권고, 사과요구, 징계요구, 정.부 총학생회장을 제외한 중앙집행위원의 해임요구
2. 감사에 따른 정.부 총학생회장의 탄핵발의안
3. 각 대의원의 회칙.세칙 위반사항 또는 직무상 비위의 공고, 시정권고, 사과요구, 징계요구
4. 감사 결과 확인된 본 회의 손해, 세칙상 한도초과의 비용, 금지된 비목의 전용에 따른 손해 등에 대한 배상 요구
5. 청문회 요구
③ 전항 제4호의 요구에 따라 본 회의 손해, 세칙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사용과 금지된 비목의 전용이 발견되면 대의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려 당해 사용 및 전용에 찬성하거나 동참한 각 기구의 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해당 비위가 전체 학생 상당수의 관심사라고 판단되면 감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⑤ 전항의 청문회는 대의원회의의 별도 의결로 설치한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7관 체육회

제93조[정의] 체육회는 본 회 학우들의 심신단련과 체육활동을 위해 봉사한다. 교내외 체육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일체를 담당한다. 학내 체육단체(가명)는 스스로가 정한 정관에 설립・운영되며, 총학생회는 그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94조[대표 및 구성] 학내 체육단체(가명)의 대표와 그 구성원들은 그 스스로가 정한 정관의 절차에 따라 대표와 구성원을 보유하며, 총학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신임된 대표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8관 기타 교내 제 단체

제95조[원칙]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사한 교내의 각 단체는 독자적 성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으며, 총학생회는 그들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6조[대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사한 교내의 제 단체가 스스로가 정한 정당한 절차와 결의로 대표를 신임하였다면, 총학생회는 그 대표 및 구성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장 재정과 그 관리

제97조(재원) ①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② 총학생회의 예산・결산 등 재원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비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총학생회의 예산・결산 등 재원의 사용은 공개한다.
④ 총학생회의 예산・결산 등 각 종 사업에 따른 재원의 운용은 세칙에 의한다.

제98조(회계 연도)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본 회의 재정은 1학기, 2학기로 나누어 집행한다.

제99조(회비) ① 본 회의 회비는 집행부에서 예정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하여 확정한다. 대의원회의의 의결이 없을 시 회비는 전년도의 책정액과 동일한 액으로 한다.
② 본 회의 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③ 회비는 총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하여 집행한다.
④ 회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학생회비 관리계좌를 총학생회 명의로 은행에 개설, 관리한다.

제100조(예산) ① 본 회의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다.
② 집행부는 제39조 ②항에 따라 지체 없이 예산안을 대의원회의에 제출한다. 다만, 제57조 ②항에 의하여 인수위원회도 대의원 회의에 예산안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1조(결산감사) 집행부는 매 학기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대의원회의에 제출하고 제43조에 따라 결산 보고서를 심의, 감사를 거친다.

제10장 탄핵

제1절 탄핵발의

제102조 [탄핵발의] ① 정·부 총학생회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회의 회칙이나 세칙을 위배한 때에는 본회 회원 500인 이상의 연서나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여 탄핵발의 요구가 있을 시에 대의원회의는 그에 따라 탄핵발의를 의결한다.
③ 탄핵발의가 의결되면 탄핵발의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파면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총학생회장의 탄핵발의가 의결되면 부총학생회장과 중앙집행위원회 전원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03조 [권한대행] ① 총학생회장의 탄핵발의 의결이 있으면 대의원 회의의 의결로 상임운영위원회 위원 중 1인을 권한대행자로 선출하여 탄핵파면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한다.
② 총학생회장의 탄핵발의 의결이 있으면 상임운영위원회는 탄핵파면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임시로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본회 회원 5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총학생회장 탄핵발의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대의원 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요구 또는 대의원 발의에 의하여 대의원 회의가 의결로 총학생회장 탄핵발의를 할 때에는 탄핵발의안에 그 권한을 대행할 상임운영위원을 동시에 선출한다.

제2절 탄핵위원회

제104조 탄핵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탄핵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05조 탄핵위원회는 탄핵발의가 있은 즉시 각종 비위 사실을 조사·심의하여 발의 다음날로 5일 이상 10일 이내로 보고서를 채택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의 의장에 송부하며 그 보고서의 전반부에 탄핵발의사유의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절 탄핵파면투표

제106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고서가 채택된 후 지체 없이 대의원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대의원회 의장의 명의로 탄핵파면투표를 위한 전체학생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7조 ① 탄핵파면투표를 위한 전체학생총회의 공고문은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1. 탄핵파면투표를 위한 전체학생총회
2. 회칙이나 세칙의 위반 사항 개요
3. 기타 비위 사실
4. 기타 사실관계
5. 증거자료
6. 탄핵발의에 있어 대표발의자 성명
7. 전체학생총회의 일시 및 장소
8.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자 성명

② 전항의 공고문 하단 우측에는 대의원회의 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성명과 개시 일자를 기재하고 최하단 중앙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수와 그 명의를 기재한다.
③ 정·부 총학생회장과 중앙집행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이 집행부가 보고서 채택 이후 탄핵파면투표를 위한 전체학생총회의 소집 및 기타 탄핵활동을 방해한다면 탄핵위원회는 별도로 그 방해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4절 파면결정

제108조 ① 탄핵발의는 전체학생총회에서의 탄핵파면투표의 결정에 의한다.
② 탄핵파면투표의 결정은 즉석에서 대의원의장이 결과를 공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 및 투표결과를 기재하여 학내에 공고한다.
③ 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파면투표가 종료되어 파면이 결정되면 부총학생회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전원이 동시에 파면된다.
④ 총학생회장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면 파면결정일을 기준으로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일 경우에는 대의원회의가 선출한 권한대행자와 상임운영위원회가 임시중앙집행위원회로서 각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6월 이상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파면결정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행한다.
⑤ 보궐선거가 종료 시까지 기간은 대의원 회의가 선출한 권한대행자와 임시 중앙집행위원회가 각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1장 선거관리

제10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본 회와 교내 제 기구의 각 종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기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의원 회의에서 선출하고 그 위원은 각 단과대학의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에서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0조(선거권) 선거권자는 본 회의 회원으로 당해 학기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111조(피선거권) ① 본 회원의 회원으로 총학생회장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임기시작일 현재 4학기를 마쳐야 하며, 부총학생회장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임기시작일 현재 2학기를 마친 자로서, 각 본 회의 회원 3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한다.
② 대의원 회의의 대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그 해당 정관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12조(선거 시기) ① 정·부 총학생회장 선거, 정·부 단과대학 및 학과·학부의 위탁으로 인한 정·부학생회장 선거, 정·부 총여학생회의 위탁에 의한 선거는 임기 개시 전 전년 11월 중에 실시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20일 전까지 그 선거일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3조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투표사무에 관하여 집행부에 각 종 필요한 지시할 수 있다.
② 집행부는 제1항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114조(세칙) ①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의원 회의에서 정한 선거 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선거운동은 제1항에 의한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본 회의 각 기구는 개인이 부담하는 선거 경비를 최소화하고 선거비용에 공영을 이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장 회칙개정

제115조[발의] ① 본 회의 회칙개정발의권은 대의원 회의에서 갖는다.
② 회칙개정은 본 회 회원 500인 이상의 연서, 대의원 30인 이상 또는 총학생회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③ 전항의 총학생회장이 제안하는 회칙개정안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6조 ① 대의원 회의는 개정안이 제안된 후 회칙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정안을 심의·수정하여 단일안을 대의원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 회의는 회칙개정위원회가 제출한 단일안을 10일 이내에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된 회칙개정안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전체학생총회 집회 7일 전 까지 공고해야 한다.
④ 전체학생총회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 회의가 제출한 개정안을 의결한다.
⑤ 회칙개정안은 제4항의 의결로 회칙개정은 확정되며, 총학생회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총학생회장이 공포하지 않을 시에는 확정된 때로 24시간 이후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⑥ 회칙개정위원회 기타 회칙개정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규정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확정된 때로 시행한다.
제2조 ① 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정·부총학생회장의 선거는 2009년 11월 중으로 시행한다.
② 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정·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2010년 1월 1일부터 개시한다.(전임의 정·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2009년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제3조 이 회칙 시행당시의 집행부가 임명한 그 구성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 회칙 시행당시의 각 종 세칙 및 각 기구의 결의와 대외적 협약 등은 이 회칙에 위배되니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5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인 일반원칙, 규범으로 성립된 법적관습, 형평과 선에 위배되지 않는 관례에 의한다.
제6조 이 회칙의 최종해석권은 대의원 회의에 있다.
제7조 이 회칙 시행당시 대의원회 호선으로 선출한 감사위원장은 이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